

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0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직제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,
- 현행 시정조정위원회 존속기한(2020년 12월 31일)을 「안산시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5년 연장

□ 주요내용

-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직제 정비(안 제2조제3항)
-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 2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불임4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10. 7. ~ 2020. 10. 27.(21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5
- 방침결정문 : 불임6

< 불임 1 > 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”를 “업무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위원장”으로, “부위원장이, 부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”로, “직제순에 따라 그 권한을”을 “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·국장의 순서로 직무를”로 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김 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획팀장 이 지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민 정 (행정 2802)

< 불임 2 >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2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12월 31일</u>로 한다.</p>	<p>제2조(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업무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위원장 -----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-----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·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-----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5년 12월 31일</u>---.</p>